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9855호)

2023.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개 요	9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9
2. 현행법 도입 경과 및 개정안 입법취지	13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5
1. 제명 및 총칙(제1편,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5
가. 제명 및 목적(제1조)	15
나. 정의(제2조)	16
2.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2편, 안 제7조부터 제38조까지)	18
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제1장,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8
(1) 도지사선거 및 도교육감 선임방법에 관한 특례(제8조)	18
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2장, 안 제12조 및 제13조)	20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12조)	20

다. 자치권 강화(제3장, 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25
(1) 도의회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등(제15조 및 제16조)	25
(2)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17조)	29
(3)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제18조 및 제19조)	32
(4)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 및 제21조)	36
라. 교육자치(제4장, 안 제25조 및 제26조)	38
(1) 교육자치조직권 부여(제25조 및 제26조)	38
마. 자치재정 및 감사위원회(제5장 및 제6장, 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41
(1) 감사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등(제36조 및 제37조)	41
(2) 감사 등에 관한 특례(제38조)	43
3.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제3편, 안 제39조부터 제87조까지) · 47	
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의 수립(제1장, 안 제39조 및 제40조)	47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제39조 및 제40조)	47
나. 첨단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특례(제2장제1절, 안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53
(1)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등(제41조 및 제42조)	54
(2)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련 특례(제43조 및 제47조)	57
(3)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특례(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63
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각종 특례(제2장제2절, 안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69
(1) 진흥지구의 지정, 지정절차 및 효과(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70
(2)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76
(3) 진흥지구 내 환경영향평가 적용의 특례 등(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85

라.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제3장제1절, 안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94
(1) 교육부장관 권한 이양(제60조, 제62조 및 제63조)	94
(2) 농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제61조)	99
마. 교육특구 지정·운영(제3장제2절, 안 제64조부터 제80조까지)	102
(1) 교육특구의 지정(제64조)	102
(2) 국제학교·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제67조부터 제79조까지)	104
바.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제4장, 안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15
(1) 관광목적 외국인 무사증 특례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제81조 및 제82조)	116
(2) 외국인에 대한 사증 특례(제87조)	120
4.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편, 안 제88조부터 제125조까지)	127
가. 관광 진흥(제1장, 안 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127
(1) 강원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제88조)	127
(2)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129
나.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제2장, 안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133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133
(2)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균 급식 의무공급(제95조)	136
다.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제3장, 안 제96조부터 제108조까지)	139
(1)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의 조성 등(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	139
(2)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적용 특례(제101조부터 제108조까지)	142
라. 임업 진흥(제4장, 안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149
(1) 「산지관리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149
마.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제5장, 안 제114조부터 제121조까지)	154

(1) 강원자치도에 민군복합단지 우선조성(제114조)	154
(2)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범위 등에 관한 특례(제115조 및 제116조)	155
(3)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158
바. 경제·산업·해양수산업 등 진흥(제6장, 안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163
(1) 석탄경석을 「광물법」에 따른 광물로 간주(제122조)	163
(2) 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 및 개발허가, 강원자치도 내 호국원에 대한 특례(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164
5. 보칙 및 벌칙(제5편 및 제6편, 안 제126조부터 제137조까지)	168
가. 청문(제126조)	169
나. 감독(제127조)	171
다. 기타 보칙 규정(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173
라.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제131조)	176
6. 부 칙	17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영의원 등 86인
2. 발의연월일 : 2023. 2. 6.
3. 회부연월일 : 2023.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제8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1) 도지사과 도교육감의 선거 및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3) 부지사의 수와 분장사무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제25조 및 제26조)

- 1) 부교육감의 수와 분장사무 및 행정기관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 각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기반조성(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융복합,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3)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5)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 등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 1) 강원자치도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는 종합계획 심의회를 거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2)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3)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4)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 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 5)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6)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7) 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8)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관광 진흥(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 1) 강원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2) 강원자치도에 있는 카지노 및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규모 및 총량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광지역에 있는

카지노업 허가 등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바.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1)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를 다른 부지로 전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축·수산물 등 군 급식 공급지원(제95조)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의 대상, 품목,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아.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등(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

1)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지역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할 수 있고,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

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환경오염시설 배출부과금, 하수도법의 과징금 및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기타 전입금으로 하고, 국가는 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3)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등, 검토, 협의내용 통보기간, 변경협의를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3)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함.

- 4)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5)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를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6)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차. 임업 진흥 및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 1)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변경해제, 산지구역 지정, 산지전용허가·신고, 재해방지 등 조사·점검·검사,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하고,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3)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지정 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상지에 한정함)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4)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등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 범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 특례(제114조부터 제121조까지)

- 1) 국가는 강원자치도 접경지역에 민군복합단지 조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민군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 2) 민간인 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하여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3) 국방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징발해제·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함.
- 4)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매각, 무상양여 등의 특례를 부여함.

타. 폐광지역 광물에 관한 특례(제122조)

폐광지역 안에서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硬石)은 광업법상 광물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함.

Ⅲ. 개 요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 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본칙 6편·16장·4절 총 137개 규정 및 부칙 5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편	장	절
제1편 총칙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안 제7조부터 제38조까지)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자치권 강화	
	제4장 교육자치	
	제5장 자치재정	
	제6장 감사위원회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안 제39조부터 제87조까지)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조성
		제2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제2절 교육특구 지정·운영
	제4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관광 진흥	
	제2장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3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안 제88조부터 제125조까지)	제4장 임업 진흥	
	제5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경제·산업·해양수산업 등 진흥	
제5편 보칙 (안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		
제6편 벌칙 (안 제131조부터 제137조까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현행법”이라 함)은 총 본칙 25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문의 개수로만 본다면 개정안은 총 112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선거 및 선임방법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는 등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고(제8조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등), ②강원자치도 내 과학기술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 첨단과학기술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③강원자치도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운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④카지노업 영업,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허가, 환경영

향평가 등 개별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음(안 제88조부터 제106조까지 등).

<개정안의 분야별 주요내용1)>

분 야	주요 내용
규제개선	<p>① (환경)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양(환경부장관 ⇨ 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소규모), 자연경관영향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3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개발계획에 대한 해제 특례(환경부장관 미협의) <p>② (산림) 산림이용 진흥,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이양(산림청장 ⇨ 도지사), 허가기준 위임(시행령 ⇨ 도조례) ○ 산지관리 권한이양(산림청장 ⇨ 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산지 변경·해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 사용허가 등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해제·구역변경 권한이양(산림청장 ⇨ 도지사) <p>③ (군사 및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시 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청취 의무부여(국방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오염정화 등 우선시행 가능(정화비용 ⇨ 매각금에서 상계처리) - 무상 대부·양여, 사용·수익허가 특례 ○ 軍 급식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구매 및 수익계약 특례 <p>④ (농업) 농지규제 경직성 해소, 토지이용 합리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농지전용허가 협의 권한이양(농식품부장관 ⇨ 도지사) 및 사무이양(시행령 ⇨ 도지사)

1) 강원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분 야	주요 내용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조성	<p>① (신산업/과학기술) 반도체 등 첨단지식분야 신성장 산업육성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단으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조성 협의 특례 부여 (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단 조성·지원,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권한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 특례부여(환경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규제(수질오염총량제 예외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특례 적용) - 산지규제, 농지규제, 정주여건(교육, 공유재산 등 특례) <p>② (경제/해양수산) 항만·배후지 및 동해안 특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국제화객선 항로 개설, 2만 톤급 이상 잠화부두 및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보유 인정) ○ 해양심층수 취수 해역지정,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 기준·실시 계획인가 등 권한이양(해수부장관 ⇨ 도지사) <p>③ (관광) 미래산업글로벌도시 활성화, 폐광지역 안정적 재원 조성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무사증제 및 체류지역 확대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 174개국 / 현 강원도 한정 ⇨ 수도권 확대 ○ 폐광지역 카지노업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제외 특례, 카지노업 허가권 권한이양(문체부장관 ⇨ 도지사) <p>④ (보훈) 강원국립호국원* 안장 및 移葬 특례</p> <p><small>*강원호국원 설치 현황: 총사업비 433억 원(2만기 규모 봉인·부대시설), 개원 목표(‘28.11.)</small></p>
자치분권 및 교육자치	<p>① (행정) 부지사·부교육감 수 등 행정기구 설치·운영기준/정원기준 권한이양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 도지사)</p> <p>② (재정/감사) 「재정준칙」 운영, 중앙행정기관 중복감사 배제 특례</p> <p>③ (교육) 교육특구 지정(특구 내 공유재산 무상양여, 다양한 학교설립·육성, 국제학교 설립), 초·중등 학교 운영 자율성 등(학칙, 교원자격, 교육과정 등)</p> <p>④ (기관구성) 도지사-도교육감 선거·선임방법 시범도입(따로 법률로 정함)</p>

2. 현행법 도입 경과 및 개정안 입법취지

현행법은 2022. 6. 10. 총 23개 조문으로 제정되었으며, 강원도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만, 시행일이 2023. 6. 11.로 규정되어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임.

2022. 10. 18.에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한 차례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음.

강원도는 대한민국 국가안보, 생태 및 물 환경 자원의 중추지역으로서 그간 중첩된 규제와 SOC 투자 부족으로 저발전·낙후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등 특별한 대책과 특별자치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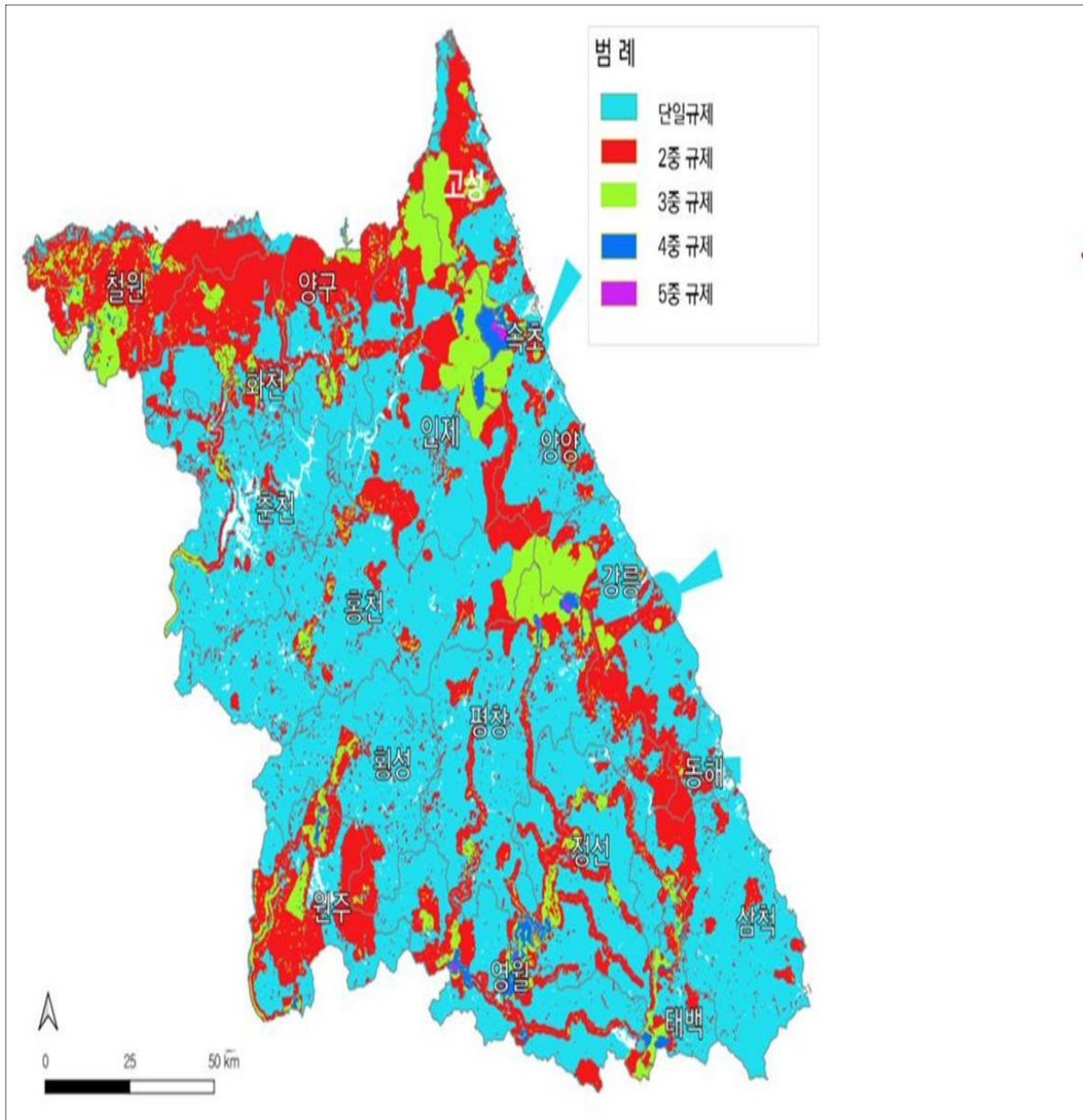
그러나 현행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만이 반영되어 있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규정은 제외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강원도와 관련된 특례규정과 강원도에 대한 사무이양의 근거 등을 대폭 신설하려는 취지로, 강원도의 특색있는 발전이 곧

2) ‘특별’ 빠진 ‘특별법’...“빈 껍데기” 비판, KBS, 2022. 5. 3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5215>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절한 특례와 필요한 발전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강원도에 대한 각종 중복규제 현황3)>



3) 강원도 제공

강원도에 대한 규제에는 문화재규제, 산지규제, 농지규제, 공원규제, 상수원보호구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등이 있음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 제명 및 총칙(제1편,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가. 제명 및 목적(제1조)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u>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u>을 위한 특별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편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u>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u>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u>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u>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함)의 산업발전 및 자치

분권 강화(제2편제3장 및 제4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조성(제3편) 등과 관련된 각종 특례규정을 신설하면서, 관련 내용을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라는 현행법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수단으로 추가하고 있음.

제명과 목적은 해당 법률의 내용과 해당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반영되어야 하는 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등 관련 본칙 규정의 도입 여부에 따라 제명 및 목적규정의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정의(제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산림이용진흥지구”란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제4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교육특구”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인 교육 및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제64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은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교육특구와 관련된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있음.

미래산업글로벌도시는 ‘특별자치도’와 함께 제명에 해당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별도의 편과 장이 존재하는 등 개정안 전체에 걸쳐 사용되는 용어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어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산림이용진흥지구와 교육특구는 개정안의 여러 규정에 걸쳐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사용되는 부분이 제한적⁴⁾이고, 용어의 개념 또한 특별한 의미를 담기보다는 약칭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정의규정을 둘 실익은 적다고 보임.

4) 산림이용진흥지구의 경우 제3편제2장제2절(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운영), 교육특구의 경우 제3편제3장제2절(교육특구 지정·운영)

2.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2편, 안 제7조부터 제38조까지)

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제1장,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도지사선거 및 도교육감 선임방법에 관한 특례(제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및 선임방법 시범도입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의 집행기관(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및 선임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지사의 선임방법 및 강원자치도교육감의 선거를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4조⁵⁾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법」”이라 함) 제8조⁶⁾는 개정안과 유

5)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6) 「제주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

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및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제주도법」의 유사규정과 달리 개정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도지사의 선임방법’으로 한정되어 있는 동시에,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특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⁷⁾는 교육감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선임)방법에는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국회는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2022. 12. 8.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⁹⁾을 심사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른다.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8)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259호,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269호

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2장, 안 제12조 및 제13조)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12조)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p> <p>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p> <p>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신 설></p>	<p>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p> <p>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p> <p>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p> <p>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p> <p>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해</p>

9)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256호,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272호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신 설></u></p> <p>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u>위원장 또는 도지사</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p> <p>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p>	<p><u>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u></p> <p>6. <u>국제적 교육환경 조성</u>에 관한 사항</p> <p>7. <u>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u>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u>위원장 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지방자치법」 제135조의 사무에 한한다)</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p> <p>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p>

현 행	개 정 안
<p>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p> <p>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p> <p>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①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③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④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⑤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35조¹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심의사항 ①~④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법」에

10) 「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참고¹¹⁾한 것으로 보임.

이 중 ①행정규제자유화 및 ④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¹²⁾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제정목적, 강원자치도의 설치목적, 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제주도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취지가 인정됨.

다만, ②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¹²⁾와 관련된 사항 및 ③국제적 교육환경 조성¹³⁾에 관한 사항은 각각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¹²⁾ 및 국제교육특구 지정·운영 근거¹³⁾의 도입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해 보임.

11) 「제주도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¹³⁾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¹²⁾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안 제43조 및 제47조 관련

13) 안 제64조부터 제79조까지 관련

또한 ⑤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①「지방자치법」 제 114조¹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강원자치도지사)인 바, 강원자치도지사를 통하여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점, ② 강원자치도지사과 강원자치도교육감이 상이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경우 예상되는 행정적 비효율성 및 정치적 갈등, ③유사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와 세종시의 사례(교육감의 부의권 미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14) 「지방자치법」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 자치권 강화(제3장, 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1) 도의회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등(제15조 및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5조(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를 정하는 경우 시·군의 지역구도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소 2명이 되도록 추가하여 정한다.</p> <p>②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p>
<신 설>	<p>제16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p> <p>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p>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¹⁵⁾ 단서는 자치구·시·군별 지역구시·도의

15)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원 최소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5만명 미만인 경우 1명, 5만명 이상인 경우 2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제1항16)은 지역구시·도의원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별표2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강원자치도 내 시·군·구별 도의회의원 최소정수는 인구에 관계없이 2명으로 하면서, ②강원도의회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먼저, ①도의회의원 최소정수의 특례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구도의원정수는 44인이며, 도 내 시·군 중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 각각 1인씩의 도의회의원정수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최소정수 충족을 위해 이들 지역에 추가 의원정수가 배분될 경우 지역구도의원정수는 총 50인이 될 것임.

그런데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정수 현황을 보면, 지역구의원정수가 44인 이상인 시·도는 서울(101), 경기(141), 전남(55), 경북(55), 경남

16)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58)의 다섯 곳에 불과하며, 모두 강원도보다 인구수가 많음.

[현행 시도별 지역구의원정수 및 인구수¹⁷⁾]

(단위: 명)

시도	인구수	지역구 정수	시도	인구수	지역구 정수	시도	인구수	지역구 정수
서울	9,570,210	101	광주	1,443,406	20	경기	13,598,766	141
부산	3,359,266	42	대전	1,455,336	19	강원	1,539,032	44
대구	2,393,179	29	울산	1,124,613	19	충북	1,599,140	31
인천	2,955,354	36	전북	1,791,536	36	충남	2,123,365	43
경북	2,629,979	55	전남	1,836,262	55	경남	3,321,460	58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자치도에 한정하여 지역구 도의회의원 최소정수의 특례를 따로 규정할 경우 시도별 인구수의 추이에 비해 강원도의 의원정수가 과다해져 시·도간 의원 1인당 주민대표성의 편차가 커지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¹⁸⁾에 따라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시 준수해야 하는 인구편차 상하기준(3:1)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바,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 ②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도 조례를 통한 선거구획정 특례와 관련하여,

17) 인구수는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었던 2021. 10.말 기준 인구임. 제주도, 세종시는 제외

18) 2014헌마189, 2018. 6. 28.

시·도의원선거구의 경우 각 시·도주민의 대표인 시·도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인 만큼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도별 개별성 및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점, 도민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구가 정파적 이해득실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획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회가 강원자치도에 설치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강원도에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¹⁹⁾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또한 설치되는 바,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두 개의 획정위를 통합·조정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주도와 세종시 또한 각각 「제주도법」과 「세종시법」에 따라 별도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19)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2)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7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 및 시군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도의 경우 5급 이하, 시·군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직무 및 임용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²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¹⁾

20)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²²⁾은 시·도와 시·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각각 6급 이하와 7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강원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확대하고, ②강원도의회 소속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은 5급이하, 도 내 시·군의회 소속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은 6급 이하로 각각 상향하며, ③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먼저, ①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 확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 도입 경과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강원자치도의 추가적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규모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규모임.

당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 도입 방식 및 도입 규모와 관련하여 의원 개인의 보좌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로 정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의회 정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는 점²³⁾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모가 결정된 것이었음.

또한, 현재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지 1년이 조금 경과한 시점²⁴⁾으로, 현행 기준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모의 적정성이나 강원자치도에 한정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추가 필요성 여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다음, ②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행업무의 특성 및 난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²⁵⁾, 강원자치도 및 도 내 시·군만 한정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24)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3일임.

직급을 상향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지막으로, ③하위규범 위임 대상 변경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전문인력이 의원 개인 보좌관으로 변질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제18조 및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8조(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2.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p>② 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신 설>	<p>제19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23</p>

25) 제주도는 5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업무 지원을 위한 하급 실무직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발생한다고 함.

현행	개정안
	<p>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2.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3.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4.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p>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강원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 제103조제1항, 제123조제1항·제2항, 제125조제1항·제2항은 전문위원, 사무직원의 수,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이며,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²⁶⁾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주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²⁷⁾를 상당부분

26)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7) 「제주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도입여부는 강원자치도 및 도의회의 인사권 확대 필요성, 인사권 확대에 따른 방만한 인사운영 등 부작용 가능성, 강원자치도 설치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주도법」을 제외한 「세종시법」과 「전북자치도법」에는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 12.>
 -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4)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 및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강원자치도의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①「지방공무원」 제41조제2항²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²⁹⁾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기준인건비제³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28) 「지방공무원법」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0)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개정안은 「제주도법」 제47조 및 제49조³¹⁾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강원자치도의 인사·조직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강원자치도에 인사운영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①직무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기구설치와 달리 지방의회 등을 통한 외부통제가 부족한 점, ②기준인건비제 적용배제는 기준인건비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연계³²⁾ 통해 자치단체 인건비를 간접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주도법」을 제외한 「세종시법」과 「전북자치도법」에는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관리하는 제도

31) 「제주도법」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⑨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2) 기준인건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라. 교육자치(제4장, 안 제25조 및 제26조)

(1) 교육자치조직권 부여(제25조 및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5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p> <p>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6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p> <p>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p>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 및 제34조³³⁾는 교육감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

의 보조기관(부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배치, 교육지원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보조기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주도법」 제79조 및 제480조³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의 균형유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주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강원자치도의 교육행정에 관한 인사·조직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부여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강원자치도교육감에 인사운영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주도법」을 제외한 「세종시법」과 「전북자치도법」에는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마. 자치재정 및 감사위원회(제5장 및 제6장, 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1) 감사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등(제36조 및 제37조)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36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33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37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p>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u>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제37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현행법은 강원자치도의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³⁵⁾,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하도록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주도법」 제137조 및 제138조³⁶⁾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

35) 「강원도법」

제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1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36) 「제주도법」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며,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3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한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당가입, 선거운동, 투표참여 권유활동 등의 폭넓은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정치운동 금지를 통한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과 제한되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간 비교형량을 통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주도법」을 제외한 「세종시법」과 「전북자치도법」에는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2) 감사 등에 관한 특례(제3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38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13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p>

「지방자치법」 제190조³⁷⁾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사실시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감

37)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주도법」 제139조³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강원자치도의 사무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포괄적 합목적성 감사³⁹⁾가 인정되므로 국가의 중복감사의 필요성이 없는 점,⁴⁰⁾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보완적 지도·지원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 국가행정의 통일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주도법」을 제외한 「세종시법」과 「전북자치도법」에는 관

38) 「제주도법」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39)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40)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6헌라6

런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3.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제3편, 안 제39조부터 제87조까지)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은 강원도를 첨단 신산업과 강원도의 청정환경이 융합하고 글로벌중심지로서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제1장), 기반조성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운영하며(제2장), 자율학교 및 농어촌유학, 교육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제3장),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등 외국인의 자유 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장).

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의 수립(제1장, 안 제39조 및 제40조)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제39조 및 제40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3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로·철도·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p>5. 국제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p> <p>6.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p> <p>7.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p> <p>8.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p> <p>9. 자연생태·생명·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p> <p>10.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p> <p>11.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p> <p>12.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p> <p>13.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p> <p>14. 수자원·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p> <p>15.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p> <p>16.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40조에 따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⑤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p> <p>⑥ 종합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강원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7.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p>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은 도지사이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p> <p>④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는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제주도법」 제140조 및 제144조⁴¹⁾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41) 「제주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중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주도법」과 유사하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 12. 10.>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은 도지사이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 ④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는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종합계획’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고, 공청회·의견수렴,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고시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해당 규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관련 산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일련의 규정이 없는데(기초조사,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인허가의제, 토지수용 등),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교육, 관광, 농업, 국제교류 등 강원자치도 개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자의 범위(공공, 민간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조합, 법인 규정 필요), 시행승인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도지사의 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⁴²⁾

또한, 안 제40조제1항제6호는 ‘강원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조문 전체에서 ‘강원투자진흥지구’의

42) 개정안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관한 개발사업 관련 규정만 두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제145조(기초조사),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8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51조(제한적토지수용) 등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정의 및 지정·해제에 대한 조문이 없어 해당 내용은 삭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주도법」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을 제162조 및 제163조 등에서 규정하고,⁴³⁾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각 호로 두고 있음.⁴⁴⁾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첨단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특례(제2장제1절, 안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은 첨단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제1절)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제2절)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음.

제2장제1절은 첨단과학기술분야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제41조 및 제4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동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며(제43조 및 제47조),

과학기술단지 등 개발사업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
- ③ 종합계획심의회 의 위원장은 도지사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 ④ 종합계획심의회 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 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반영하여 개발부하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례를 두고(제44조),

「물환경보전법」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배출시설 허용, 「수도법」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에 대한 사업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둬(제45조 및 제46조)

(1)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등(제41조 및 제42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1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42조(강원과학기술원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활용 융복합산업,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취약한 과학기술기반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신산업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분야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강원권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2022년에는 강원자치도 내 춘천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신규지정되어 2026년까지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특화분화 기술사업화 거점을 육성할 예정임.

또한 과학기술원의 경우 현재 전국에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경북(DGIST), 울산(UNIST), 전남(KENTECH)가 운영중에 있어 수도권 및 강원권에는 과학기술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나, 과학기술원의 설립에는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한 점, 과학기술원의 추가적인 설립 필요성,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 전국 학령인구 및 교육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립 관련 특례의 도입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제주도법」, 「세종시법」 및 「전북자치도법」 모두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 분	부 처 의 건													
제41조,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요건 완화된 연구개발특구 이미 존재) 「광역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특구 육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대폭완화한 「강소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체계적·일관적 관리)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특구별 지정요건 지속여부, 연차별 성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 시정조치 등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동 특례를 통한 예외적 특구 지정 시 일관적 기준 마련이 곤란하여 관리에 혼선 예상 											
제42조,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원은 별도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관계부처 협의(기재부, 교육부 등)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국적인 학령 인구 및 강원지역 대학 신입생 총원률과 입학정원의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 ※ 강원지역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등) 관련 통계(한국교육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총원률) ('13) 95.9% → ('22) 87.0% - (정원 내 모집인원/입학생 수) ('13) 30,258명/27,213명 → ('22) 22,552명/19,626명 											
	기획재 정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수 등을 감안 권역별로 적정하게 설립·운영 중 <table border="1" data-bbox="699 1630 1390 181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권역</th> <th style="width: 25%;">중부권 (강원·충청·대전)</th> <th style="width: 25%;">영남권 (대구·경북, 부울경)</th> <th style="width: 35%;">호남권 (전남·전북·제주)</th> </tr> </thead> <tbody> <tr> <td>인구수</td> <td>약 717만명</td> <td>약 1,290만명</td> <td>약 575만명</td> </tr> <tr> <td>과기원 현황</td> <td>한국과학기술원</td> <td>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td> <td>광주과학기술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은 중부권에 포함(인구수 150만명 수준) ○ 강원과학기술원 추가 설립은 他권역에서 유사 요구가 남발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 강원 소재 이공 	권역	중부권 (강원·충청·대전)	영남권 (대구·경북, 부울경)	호남권 (전남·전북·제주)	인구수	약 717만명	약 1,290만명	약 575만명	과기원 현황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권역	중부권 (강원·충청·대전)	영남권 (대구·경북, 부울경)	호남권 (전남·전북·제주)											
인구수	약 717만명	약 1,290만명	약 575만명											
과기원 현황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p>계열 대학의 신입생 충원을 감안시 시급성 부족, 과학원 설립은 해당 지역 일반대학 이공계 반발 우려</p> <p>* 현재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요구 있음(최형두)</p>
--	--	--	--

(2)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련 특례(제43조 및 제4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4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를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추천한 개발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p> <p>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따라 조성된 기존 산업단지를 과학기술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시설을 포함한다)은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적으로 지정한다.</p> <p>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제5항, 제46조의2</p>

현행	개정안
	<p>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p>

개정안은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지식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자치도 내에 국토부장관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략산업특화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43조)

산업입지 기초조사, 의견조정,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실시계획 승인,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준공인가 및 검사 권한을 강원자치도로 이양할 수 있게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산단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7조).

안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개발사업자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제주도법」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적기관의 성격を 지니며 위탁대상을 개발센터로 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안 제4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7조는 「제주도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특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⁴⁵⁾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

관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지원⁴⁵⁾에는 항만, 도로, 철도,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중·장기 예산이 소요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하는 타 지자체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우선적 시책(법 제18조) 및

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5. 12. 29.>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② 삭제 <2016. 3. 29.>
-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속처리 특례(법 제19조) 등을 받는 등 여러 특례가 부여되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특화단지 신청권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 분	부 처 의 건		
제43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실효성 부족) 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제가목 및 제6조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동 개정안의 과학기술단지와 목적이 동일하며, 현재도 강원자치도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으나 동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는 국가산단 조성이 불가능처럼 오인될 수 있어 삭제 필요 ○ (입법실효성 부족, 특례논란 우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현재도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것은 특혜논란의 우려가 있어 동 조항 ‘삭제’ 필요
제4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단 개발목적과 상충) 산업단지는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제6조)와 지자체가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제7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의 국가산단 목적을 고려할 때 국가산단 관련 권한 위임 불가능,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부담금·세제·기반시설 지원 등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인허가권한의 주체 만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 인허가권한을 도지사가 가질 경우 산업입지법 체계와 상충 발생, 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됨
--	---------	---

(3)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특례(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의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수도법」 제7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4항 및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강원도에 할당된 지역개발부하량⁴⁷⁾의 부족으로 대규모 산업 유치에 한계가 있어 오염총량관리계획 특례를 두고(제44조),

과학기술단지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 취수시설 지역, 특별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설치 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배출시설의 결정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며(제45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및 폐기물 등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식품접객업, 관광숙박

47)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지역개발부하량”이란 오염총량관리계획 기간 동안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제14조(지역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 ① 시·도지사는 지역개발부하량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특대유역 생활계 자연증감부하량(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계 부하량을 포함한다)은 소규모개발부하량으로서 지역개발부하량에 포함한다.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존오염원 최종부하량(단계 시작전년도 오염원이 제15조의 삭감계획에 의하여 최종년도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 자연증감부하량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별 명칭, 위치(주소, 단위유역, 소유역), 사업기간, 종류, 규모,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삭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 목욕장업의 신규 설치, 행락·야영 야외취사의 금지 등 행위규제를 적용받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제46조).

[현행법에 따른 상수원 관련 규정]

<p>「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p>	<p>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u>각종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어패류 양식행위, 농작물 경작 행위 등이 금지됨.</u></p>
<p>「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p>	<p>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u>공장을 설립할 수 없음.</u></p>
<p>「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p>	<p>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u>특별대책지역 내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u></p>
<p>「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p>	<p><u>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노인요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도변경을 금지</u></p>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은 주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공장설립 등 행위제한 및 금지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수배출시설 설립 시

환경부 장관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권한 이양 시 다양한 분야의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규제를 받고 있는 충청북도 및 경기북부지역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상·하류지역의 협의와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이며 하류지역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상류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등과 관련해서는 특히 한강수계 및 낙동강수계와 관련된 하류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경남)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겠음.

「제주도법」에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제371조)⁴⁸⁾를 두어 개정안과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제5항·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제7항·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7항·제8항·제10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

같이 제33조제7항에 관한 부분을 도조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으나, 한강수계 및 낙동강수계로 전국적으로 수자원이 연결되어 다른 하류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원자치도와 달리 제주도는 분리된 섬으로서 수자원 체계가 강원자치도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는 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에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물환경보전법」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는 점 등⁴⁹⁾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9)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9]를 적용한다.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 1]를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8]을 적용한다.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 분	부 처 의 건		
제44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환경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개발부하량에 상당하는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 변경·반영 후 개발사업 추진 가능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는 사항(한강수계법 제8조의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자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방류수 수질개선 등
제45조,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환경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수용 불가 ※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공정누출(①'91년 구미 두산전자 폐놀 유출사고, ②'12년 구미 불산유출사고, ③'20년 천안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무단배출('94년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 등) ○ 배출시설의 입지규제는 상·하류에 위치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간 갈등 우려 등 이양 또는 특례사무로 부적합 ※ 지방이양일괄법('18, 배출시설업무 등 이양) 개정시 상하류 영향을 고려하여 환노위에서 불수용('18.11 의결)
제46조,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도조례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의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낙동강 하류지역에 수질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수질관리 필요

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각종 특례(제2장제2절, 안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제2장제2절은 관광개발지역 또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지 등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다수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제48조), 진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제49조),

진흥지구 지정이 있을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국가산업단지 등 타법에 따른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 및 구역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며(제50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제51조),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제52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제53조), 인·허가의제(제54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55조), 진흥지구 내 각종 특례를 둠(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강원자치도는 도내 지형 특성상 산림면적이 넓고 산림 중 행위제한이 많은 보전산지의 비율이 높아,⁵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진

50) 산림면적 1,371천ha(도 전체면적의 82%), 보전산지 1,207천ha(산림면적의 88%)

흥지구 내 산지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일괄 해소하여 지역개발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기업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1) 진흥지구의 지정, 지정절차 및 효과(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8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p>②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진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의 장애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⑦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애에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⑧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p> <p>⑨ 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제49조(진흥지구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진흥지구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p>제50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진흥지구 지정이 있을 때에는 제49조의 진흥지구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 및 구역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7.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현행	개정안
	9.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11.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12.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진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8조 및 제49조).

또한 진흥지구를 지정하면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총 12개 관계 법률에 따른 각종 지구·계획 등의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 및 구역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0조).

개정안의 각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의 전면적인 보완 및 체계·자구의 조정,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기본계획’ 용어를 ‘개발계획’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각종 지구지정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은 5년, 10년 등의 주기를 가지고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각 지구의 중장기적인 정책·개발 방향 등에 관한 최상위계획에 해당함.

반면,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은 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수립되고, 진흥지구의 지정에 따른 향후 개발 방향이 상세히 정해지는 등 중장기적인 개발 방향성 설정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개발계획 내지 조성계획에 가깝다고 보임.

둘째, 주민의견청취 등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임.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효과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산림진흥지구의 지정은 인근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률에 주민의견청취 등 주민참여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진흥지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예방할 필요도 있겠음.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48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환경부	수정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 - 광역시·도와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국가에서 개발기본계획의 광역적 환경영향, 상위계획과 연계성, 입지

제50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의 타당성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필요
	산림청	일부 수용	○ (제1항,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수용 ○ (제2항) 수정수용 - 산림청장과의 협의 명시 포함 타당
	문화체육관광부	신중 검토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조성하나, 관광지·관광단지는 관광객의 관광 및 휴양을 목적으로 조성, - 관광지·관광단지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간주되어 각종 세제혜택과 토지수용권 등의 특례가 부여되므로 관광지·관광단지 지정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필요
	환경부	신중 검토	7.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 하천구역 결정 및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은 국민의 안전 및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하천 치수방재 사업의 주요 사항임 - 관련 규정과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홍수방어시설 부재,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지역의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 중·대규모 수도사업은 최상위 수도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광역상수도 설치계획과 부합하여야 수도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비상 연계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수도사업 추진이 가능 9.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 하수발생량 및 처리 여건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장(시장·군수)이 수립하는 계획이나,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체와 상이, 의제 처리 시 부실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민 안전 저해 등 우려
	산림청	신중 검토	1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지구의 지정 - 민통선산지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를 다른 특별법의 특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환경부	신중 검토	<p>12.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p> <p>- 개정안은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연공원법」 제4조의2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로서 지정해제 절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자연공원의 지정으로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연공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p>

(2)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1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5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3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개발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p>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54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지정·결정·신고·협의·해제 등</p>

현행	개정안
	<p>(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현행	개정안
	<p>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p> <p>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p> <p>1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p> <p>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를</p> <p>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15.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p> <p>1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p>

현행	개정안
	<p>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p> <p>18.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p> <p>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p> <p>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p> <p>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p> <p>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p> <p>2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p> <p>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p> <p>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p> <p>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p>

현행	개정안
	<p>3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p> <p>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p>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대체지정(안 제51조 및 제52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및 그에 따른 인허가의제(안 제53조 및 제54조)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각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의 전면적인 보완 및 체계·자구의 조정,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산림이용진흥사업의 개념정의가 필요함. 개정안은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정의하거나 본문에서 약칭하고 있지 않음. 법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림진흥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산림이용진흥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수단은 무엇인지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진흥사업 등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는 표현을 별도의 약칭이나 개념정의 없이 혼용하고 있는 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용어의 통일도 필요해 보임.

둘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외에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음.

사업시행자에 민간투자자를 포함한 것은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의 자본 및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등에서도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¹⁾

5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 기반 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민간투자자를 사업시행자에 포함함으로써 공익보다 개발이익을 우선시하여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셋째,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인허가의제 포함대상 인 허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5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산림청	수정 수용	○ 국유림은 일반적인 국유 재산과 달리 산림의 수원함양 및 생태보전 등 사유림에 강제하기 어려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전과 이용,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는 바에 따라, 편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검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 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설립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
-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도가 필요하므로 '사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반영'하는 안으로 동의
제54조, 인·허가 등의 의제	산업통 상자원 부	신중 검토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 처분 및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제대상이 될 수 없음
	환경부	일부 수용	19.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 (수정수용)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 필요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삭제)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이루어지나, '산림이용 진흥지구' 내의 사업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자연공원 내 허용되는 행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3) 진흥지구 내 환경영향평가 적용의 특례 등(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p> <p>② 제53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p> <p>③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p> <p>④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56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0조·제12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18조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② 진흥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 및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법 제7조에 대한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진흥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p> <p>⑤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지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 허가 기준을 도</p>

현행	개정안
	<p>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⑥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 및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⑦ 산림청장은 제5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국유림(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p> <p>⑧ 진흥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u><신 설></u> 제57조(진흥지구 내 환경영향평가 적용의 특례) ① 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확인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p>

현행	개정안
<p><신설></p>	<p>확인에 관한 사항(이하 이 항에서 “사후조치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하되,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⑥ 제5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제58조(조세·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하천법」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p> <p>제5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개정안은 토지 등의 수용·사용,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 환경영향평가 적용의 특례 등 산림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용이한 수행을 위한 각종 특례를 도입하고 있음.

다만, 각각의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55조는 사업시행자가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 제4조의2⁵²⁾는 「공익

52) 「공익사업법」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사업법」 제4조 또는 별표의 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법」의 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안 제55조 및 관련 규정의 삭제·조정이 필요해 보임.

둘째, 안 제57조는 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고 있으나, 안 제102조⁵³⁾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하여 조문이 중복되므로 개정안 내 조문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58조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먼저,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별법상 조세 감면 근거가 있더라도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3) 안 제102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 근거가 직접 규정⁵⁴⁾되어야 하므로 개별법상 재량규정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조세 감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개발부담금 제도 등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에 혜택만 부여하고 있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공익적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규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개별법을 통한 면제·감면 특례 등으로 인해 각종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⁵⁵⁾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종 부담금 면제·감면에 대해서는

54)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5)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부과 제외 및 감면 대상 법률 및 관련 사업을 나열하고 있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사업의 시행 이후 사업의 완료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바,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기타 규정에 대하여는 부처 간 이견이 있으므로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56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산림청	일부 수용	○(제1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특례 불수용 - 해당 지역은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동일기준적용 관리가 타당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경감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적용의 특례			<p>○(제2항, 제3항) 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일관된 기준적용 필요성, 백두대간에 전 구역에 대한 보호필요성 고려 <p>○(제7항, 제8항) 일부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안의 심사경과에 맞추어 「국유림법」의 관계규정을 개정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타당
	환경부	신중 검토	<p>○(제6항, 용도지구 허용행위, 공원관리청 행위허가 기준 도조례 위임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공원구역 내에서의 허용행위를 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자연공원 내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공원의 훼손이 우려되는 바, 현행 「자연공원법」을 유지함이 바람직함
	농림축산식품부	신중 검토	<p>○(제5항, 초지전용 허가기준 도조례 이양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전용 허가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시 「초지법」의 기준보다 완화되어 초지 훼손 심화 우려 -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으로 축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초지법 제정 취지 훼손
제57조, 진흥지구 내 환경영향평가 적용의 특례	환경부	신중 검토	<p>○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보전가치와 개발이익이 상충할 우려가 크며, 개발기본계획 입안, 사업시행자 지정과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권한이 모두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오히려 객관성 논란과 갈등 등 사업 시행의 장애가 되어 입법 목적에 배치될 수 있음</p>
제58조, 조세·부담금의 감면	기획재정부	신중 검토	<p>○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없이 개별법상 규정실익이 없으며, 법사위 법제처 등도 훈시적 조문인 개별법상 조세감면 규정에 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 규정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 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라.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제3장제절 안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은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등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제1절)과**

교육특구의 지정, 국제학교의 설립, 국제학교의 운영 등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교육특구 지정·운영(제2절)으로 이루어져 있음.**

(1) **교육부장관 권한 이양(제60조, 제62조 및 제63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60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2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p> <p>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63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④ 도교육감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⑤ 도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p>

현행	개정안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도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안 제60조와 제62조는 「제주도법」과 동일하게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와 「유아교육법」 일부의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함.

안 제63조는 「제주도법」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주도법」에 규정된 내용에 추가하여 ①교원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학교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③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란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는데,⁵⁶⁾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있음.⁵⁷⁾

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관련하여, 지정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생태 및 관광산업(반도체, 산림환경, 커피베이커리 등)을 반영하여 강원자치도 산업 수요와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교육자치를 보장할 수 있을

5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57)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2022.7.4.),

- 2020년 선정되어 2022년 신입생을 모집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인공지능전자과**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7개 실습실과 28종 기가재를 구축하여 첨단산업 분야 기술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
- 2019년 선정된 **경북 한국펫고등학교**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과로 학과를 개편하고, 반려동물 교육센터, 야외훈련장 등을 구축하여 22명 모집인원에 79명 학생이 지원하는 등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가 높았음.

것으로 기대됨.58)

다만,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타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충원이 미달되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등 다른 특수목적학교 유형에 대하여 시·도별 상이한 지정절차를 둔 사례가 없으며, 교육부장관의 지정 동의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네트워크, 연구·지원기관 등 인프라 지원이 어려워 성공적인 산업수요 맞춤형고 모델 정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58)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마이스터고 예시를 들고 있음.

강원형 마이스터고 예시	추진 방향
반도체(미래형) 마이스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공고 모바일전자과 → 반도체시스템과 개편 ○ 반도체시스템과를 마이스터학과로 지정 ○ 향후 원주 반도체 공장 확정시 마이스터고 승격 추진
강원생명과학 마이스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양고 반려동물케어과 신설(2023년) ○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학과 활성화 시 마이스터고 승격 추진
항공정비시스템 마이스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기계공고 → 한국항공고등학교로 교명 변경(2024년) ○ 학과 활성화 시 마이스터고 승격 추진
강원산림과학 마이스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산림 면적의 21%, 강원도 전체면적의 81%가 산림 ○ 인제군(인근지역) 일반고→강원산림과학고 전환 추진 ○ 인제군(인근지역) 직업계고에 산림 마이스터학과 지정 ○ 학과 활성화 시 마이스터고 승격 추진
강원문화산업 마이스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정보공고 커피베이커리과 신설(2024년) ○ 정선아리랑과 같은 문화 콘텐츠 연결 ○ 학과 활성화 시 마이스터고 승격 추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63조,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교육부	<p>신중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 준비 혼란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다른 고교의 경우에도 특정 학교 유형에 대하여 시·도별로 상이한 지정 절차를 둔 사례는 없음 - 실제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지정 및 지정 취소 방식, 입학전형과 그 시기, 마이스터고 표준요건 등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만일 산업수요 맞춤형고 중 일부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고, 일부는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물론, 학교 운영 지원 등에서 혼란을 야기 ○ (교육부와의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수요맞춤형고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개교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개교 이후에도 교원 역량강화, 성과관리 등 지원 - 특정 지역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를 지정하는 경우 <u>전문가 네트워크, 연구·지원기관, 행·재정적 지원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성공적 모델로 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음</u>

(2) 농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제6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의 전학(이하 “농어촌유학”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

현행	개정안
	<p>력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외 지역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의 전학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①강원자치도 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농촌유학에 포함되지 않고, ②강원자치도 외 농촌 지역에서 강원자치도 내 농촌지역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도 농촌유학에 포함되는데,

개정안에 따른 농촌유학의 의미가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어촌유학의 목적이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강원자치도의 자연친화적 생태교육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위기에 놓여있는 강원도 내 작은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마을공동체 살리기에 있으며,

생활기반 용이성 및 친숙성 등을 고려하여 가족의 곁을 떠나 농촌에

서 생활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타 시·도에서 전학하기보다는 같은 시·도에서 전학하려는 수요가 높을 것임을 고려해볼 때 강원자치도 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학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마. 교육특구 지정·운영(제3장제2절, 안 제64조부터 제80조까지)

제2절 교육특구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교육환경 및 지역 특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특구의 지정(제64조), 국제학교 설립·운영, 국제교육특구 조성 및 국가의 교육재정 특별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제65조부터 제78조까지), 강원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79조).

(1) 교육특구의 지정(제64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64조(교육특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제2항 각 호의 국제적인 교육환경 및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이하 “교육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교육특구의 지정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 국제교육특구 2.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 일반교육특구 <p>③ 교육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강원자치도 교육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할 것

현행	개정안
	<p>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p> <p>④ 도지사는 제77조에 따라 학교의 폐쇄승인 등으로 교육특구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교육특구를 지정한 경우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 안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국제교육특구) 및 지역특화 교육환경(일반교육특구)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제교육특구 내 국제학교 설립을 포함하여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강원자치도 내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학교 교원 및 직원의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임.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⁵⁹⁾이므로 교육특구 지정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 법률안에는 교육자유특구의 근거를 두고,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⁶⁰⁾ 관련 심사경과 및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2) 국제학교·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제67조부터 제79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65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2. 교육과정 운영 3. 교원 연수

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6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①(생략)

②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자치와 제2항에 따른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4. 외국어교육</p> <p>5. 이 법에 따른 교육특구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p> <p>6. 기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66조(다양한 학교의 설립 및 육성) 교육특구 내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학교 2.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3.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 학교 4.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학교 5.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학교 6.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p><u><신 설></u></p>	<p>제67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교육특구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6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u><신 설></u></p>	<p>제69조(국제학교 설립 자격) 교육특구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 2. 이 법, 다른 법령 및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p> <p>제70조(국제학교 설립승인 등) ① 제69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69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p> <p>③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신 설></p>	<p>제71조(위탁운영 등) ①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 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69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69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69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제72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p>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p> <p>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受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제73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4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61 618 405 651"><신설></p> <p data-bbox="261 1308 405 1341"><신설></p> <p data-bbox="261 1597 405 1630"><신설></p>	<p data-bbox="512 331 1390 421">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p> <p data-bbox="512 445 1390 595">⑥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data-bbox="480 618 1390 1283">제75조(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p> <p data-bbox="480 1308 1390 1570">제76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 data-bbox="480 1597 1390 1975">제77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p> <p>제78조(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 국가와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은 교육특구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9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p> <p>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p> <p>⑧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p> <p>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p> <p>⑩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80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p>

현행	개정안
	<p>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제69조제2호의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 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69조제2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등을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을 하는 경우 제69조제2호의 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국제학교란 외국인학교,⁶¹⁾ 외국교육기관⁶²⁾과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학교로,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정원 쿼터⁶³⁾없이 제주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제주·국내외 법인(영리법인 포함)이 설립하는 학교이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지 않아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

개정안은 「제주도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국제학교 관련 조항을

6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자녀교육을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 쿼터를 30%로 둠(20%추가 가능, 최대 50%)

6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자치도 내에 설립, 내국인 쿼터를 30%로 둠(20%추가 가능, 최대 50%)

63) 외국인학교의 경우 국내학생 비율과 외국인학생비율의 제한이 있으나, 제주도에 설치되는 국제학교는 학생의 100%를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음.

두어 국제교육특구 취지에 맞게 교육부 및 관련법률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제주자치도와 같이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주도법	개정안	비고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제67조(국제학교 설립 등)	제주법과 동일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법과 동일
제225조(국제학교 설립 자격)	제69조(국제학교 설립 자격)	제주법과 동일
제226조(설립승인 등)	제70조(국제학교 설립승인 등)	제주법과 동일
제227조(위탁운영 등)	제71조(위탁운영 등)	제주법과 동일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72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주법과 동일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73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주법과 동일
제230조(교원임용 등)	제74조(교원임용 등) +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국공립국제학교 교직원에게 특별수당 지급	제주법과 유사 (항추가)
제231조(회계처리 등)	제75조(회계처리 등)	제주법과 동일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76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주법과 동일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77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주법과 동일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78조(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제주법과 유사 (영어→외국어)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79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주법과 동일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80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주법과 유사

안 제79조는 「제주도법」을 차용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교육기관 관련 사항 외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⁶⁴⁾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그 대상을 한정⁶⁵⁾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강원자치도 전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4) 제79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⑨ (생략)

⑩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바.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제4장, 안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제4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한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제81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제82조), 불법이탈 방지를 위한 선박·운수업자 등 관련 사업 종사자의 금지 의무 및 감독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출입국관리법」 준용 관련 조항임(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비고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제81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제주법과 유사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82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주법과 동일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 금지)	제83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제주법과 동일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제84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제주법과 동일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 의무)	제85조(공무원 등의 통보 의무)	제주법과 동일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등),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86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등)	제주법과 동일
	제87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1) 관광목적 외국인 무사증 특례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제81조 및 제82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1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강원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범위 및 입국 절차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82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81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p> <p>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p>

현행	개정안
	<p>허진 경우</p> <p>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항만과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와 동일하게 강원자치도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10조⁶⁶⁾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에 따르면 관광, 방문 등의 목적의 체류자격(B-2)은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

66)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만 부여되므로, 해당 특례가 부여될 경우 강원 자치도 내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 관광 및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제 행사 개최에 따른 해외여행객의 유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주도와 강원자치도의 지리적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섬이라는 특성상 제주자치도는 항공기·선박으로만 이동이 가능하여 공항과 만에서 ‘출도검색’을 실시하여 외국인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있으나, 강원자치도의 경우 내륙에 위치하는 지리적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 버스, 승용차, 도보 등으로 이동할 경우 출입국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만 출도검색>

-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제주지역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공항·만에서 항공기·선박 탑승 전에 자동출도심사대에 여권을 스캔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제주항과 성산포항에서 실시
- 제주특별법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항만과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법무부

또한 개정안에서는 「제주도법」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강원자치도 외 대한민국의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허가사항 확인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항만과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류지역 확대허가는 허가를 받을 경우 강원자치도 내 무사증입국과 다르게 대한민국 전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항공기·선박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제주자치도에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공항, 항만, 선박, 항공기에서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두고 있으나, 강원자치도의 경우 버스, 승용차, 도보 등으로 이동할 경우 현실적으로 허가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81조·제82조 무사증 제도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	법무부	신중 검토 ○ 강원도의 경우 버스·승용차·도보 등 이동 수단이 다양하여 국경선관리 수준의 모든 통로의 차단·검색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을 통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제도 운영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됨

			<p>○ '22. 6월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시행(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이후 여행사 및 준법도우미 단체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u>현재까지 156명(3명 검거 포함)이 무단이탈한 사례가 있음</u></p> <p>※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23. 3월 현재 약 41만명)로 무사증 입국제도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p>
제87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 특례	법무부	신중 검토	<p>○ 안 제87조는 강원도 전체 지역에서 모든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체류기간의 상한 및 연장 요건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존 특례의 사례와 맞지 않고, 체류 관리의 공백이 우려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p>

(2) 외국인에 대한 사증 특례(제8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7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체류자격을 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67)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67)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둬.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체류자격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증(E-8)⁶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에서 제외⁶⁹⁾되어 영농시기(3월~8월)에 탄력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농작물의 수확까지 10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농업분야 계절근로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대해 5개월 이하 1회에 한하여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어 해당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연장 상한 제한을 완화하고, 강원자치도 내 농업분야 인력난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 장기체류자격]

- 계절근로(E-8)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 계절근로(E-8) : 5개월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계절근로(E-8)는 제외한다.]

해소 및 강원자치도 인력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력을 적극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87조는 강원자치도 전역에서 모든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상한, 체류기간 연장 등 광범위한 특례를 부여하나, 해당 조문의 입법 목적이 강원자치도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증특례를 부여하려는 취지인 경우 유사 입법례⁷⁰⁾를 고려하여 특례를 부여하려는 체류자격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에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안전한 체류관리를 위해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

70)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의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 등 특정목적에 위해 체류자격 특례를 부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둘째, 강원자치도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되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사증발급 조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⁷¹⁾

7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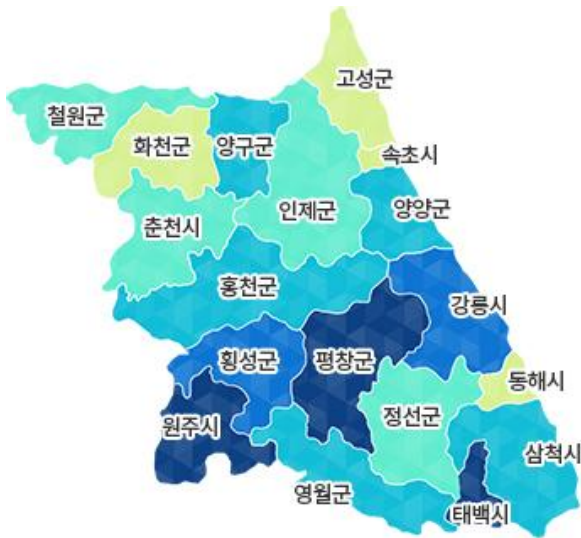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강원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12개)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그림자료 : 강원도청

해당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변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범위를 확대하고 체류기간의 연장을 통해 취업활동 기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및 정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상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 중(’22.10.4~’23.10.3)인데, 해당 사업은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만을 대상으로 장래 거주 요건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비자를 선(先)발급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하며, 인구감소지역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외국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인구수요를 고려하여 비자를 발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따라서 해당 시범사업 이후 인구감소지역 사증 특례 경과를 지켜보면서,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 규모 및 외국인재 조건, 국가별 및 업종별 도입쿼터, 내국인 일자리 잠식 여부 및 잠식 방지를 위한 보완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원자치도 내 사증특례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2. 10. 4. ~ '23. 10. 3. (1년)
-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
 1. **지역우수인재** :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지역) 거주(F-2)비자 :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에서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가족 초청 가능
 - (예시1) 지역 보건 대학 졸업 유학생 → 노인돌봄(간병 등) 직종 취업
 - (예시2) 용접 자격증 소지 외국인 → 지역 뿌리 기업에 취업
 2. **동포가족** :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사전에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F-4) 취업활동 허가’ (신설 예정)를 받은 경우, **제한없이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 가능**
 -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에 따라 재외동포(F-4)에게 제한된 단순노무 등 53개 직업 모두 허용
 -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재외동포(F-4)와 동거하

는 배우자(F-1))

- 영주(F-5) 자격 요건 완화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동포 맞춤 정착지원 프로그램 제출

- (예시1)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예시2)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창업·취업 지원, 동포 자녀 교육지원 등

○ 시범 선정 지방자치단체(법무부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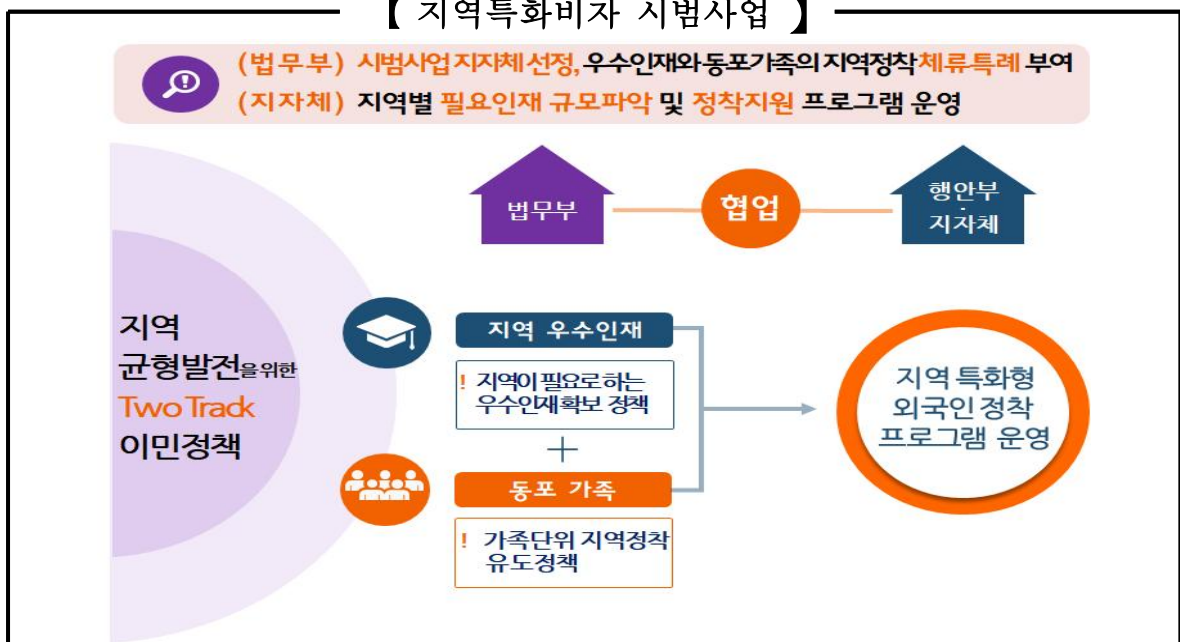
- (광역)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고흥군, 보성군), 경상북도(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성주군), 부산광역시(서구, 동구, 영도구),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 (기초)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고성군, 대구광역시 남구

※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무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



※ 자료 : 법무부

4.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편, 안 제88조부터 제125조까지)

가. 관광 진흥(제1장, 안 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1) 강원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제8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8조(강원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강원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여행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개별법상 조세 감면 근거가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 근거가 직접 규정⁷²⁾되어야 하므로 개

7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법상 재량규정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조세 감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88조, 강원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에 배치)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에 재량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세제지원 불가 - 법사위 등도 개별법상 조세감면 규정에 부정적 ※ 다른 법의 유사 조문에 대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점을 지적, 해당 법안 통과를 유보('22.9월 전체회의) ※ 최근 대구·경북 및 광주 신공항법 제정안, 1기 신도시 특별법안 협의시 조세감면 근거규정을 삭제키로 여야 정 협의 ○ (조세특례 도입 타당성 측면) 강원지역 내의 지정면세점 설치에 과세원칙, 관리가능성 및 과세형평성 감안시 수용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과세원칙에 따라 해외소비가 예상되는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정책과 배치 - 내륙지역의 경우 섬지역*과는 달리, 출입관리상의 문제로 면세물품 부정유출 등 유통교란이 발생할 소지 * 우리나라(제주도)뿐 아니라 해외 내국인 면세점(중국 하이난, 일본 오키나와, 대만 진먼)은 모두 섬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운영 - 인근 상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및 타 지역의 유사 요구 쇄도 우려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

		<p>폐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은 일반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 규정으로 오해 가능하고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 할 소지 <p>「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관부처의 감면 건의서 제출, 조세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정절차 선행 필요 *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등) 	
	산업통상자원부	수정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지역 내 위치한 지정면세점으로 한정) “24년 태백 장성탄광, “25년 삼척 도계탄광 순으로 폐광이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 탄광지역은 향후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한 지역공동화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강원도내 폐광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석탄 대체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내국인 면세점은 강원도 내 폐광지역으로 설치를 국한할 필요

(2)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9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관한 특례)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4조의2,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p>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및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총량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카지노업 및 카지노사업자는 총량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초과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제외한 관광사업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 또는 주민지원 사업 등” <p>③ 제1항의 적용시한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까지 효력을 가진다.</p> <p><u><신 설></u> 제90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u><신 설></u> 제9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8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②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관련 사항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제8항 단서,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p>

현 행	개 정 안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2항(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제79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카지노사업자⁷³⁾에 대한 매출총량제 적용을 배제하고, 매출총량제 배제에 따른 초과수익금을 강원자치도 내에 재투자 하도록 하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⁷⁴⁾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카지노업에 대한 강원자치도지사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카지노업을 활성화하여 강원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73) 강원랜드 카지노(00. 10. 12.~), 알펜시아 카지노(80. 12. 9.~/외국인전용)

74) 「폐광정거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카지노업은 사행산업으로 도박중독 등 부작용 우려, 사행산업인 카지노업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업소로서 관리권한의 강원자치도 이양에 따른 각종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강원자치도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89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총량제 제도취지 고려 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매출총량제의 제도적 취지는 사행산업의 매출액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음. -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으로는 도박중독 등 부작용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적정 수준의 매출총량 관리 필요
제90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지노업은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부여하는 특권적 성격을 가지며, 전국단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 내국인 카지노는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특정 지자체에 자체적 관리·감독 권한 부여는 부적합
제91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자의 절차상 의무(지위승계 신고, 휴·폐업 신고 등) 및 관광사업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

나.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제2장, 안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2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p> <p>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93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94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주도법」 제274조, 제275조 및 제277조⁷⁵⁾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와 강원자치도의 지리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도는 섬 지역으로서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 및 특수성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미하나, 강원자치도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인접해 있어 강원자치도의 행위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⁷⁶⁾

75) 「제주도법」

제27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76) 농업진흥지역 관련 권한의 제주도 이양 후 제주도는 2008년 도내 농업진흥지역을 전면 해제했음.

추가로, 관계기관이 국토의 체계적 관리와 우량농지 보전에 악영향 끼칠 우려, 농지법 실효성 저해 우려, 식량자급률 저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92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 식품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체계적 관리와 상충 우려 -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관리**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달리 적용 -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변경·관리와 직접 관련되어 그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취지 등을 감안 유사절차**에 따라 관리될 필요 * 농림지역 주된 지정대상을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정(제6조), 관리지역이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변경(제4조),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제한 등은 농지법에 따르도록 함(제76조) **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법」도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일본의 경우에도 농용지구(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의 지정·해제·변경 권한을 농림수산성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p> </div>
제93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 식품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체계적 보전을 저해할 우려) - 농업진흥과 농지보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p>·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p> <p style="text-align: center;">< 전용하려는 농지면적별 전용허가(협의권한) ></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구분</th> <th>농식품부장관</th> <th>시·도지사</th> <th>시장·군수 등</th> </tr> </thead> <tbody> <tr> <td>농업진흥지역 안</td> <td>3만㎡ 이상</td> <td>3천㎡ ~ 3만㎡</td> <td>3천㎡ 미만</td> </tr> <tr> <td>농업진흥지역 밖</td> <td>30만㎡ 이상</td> <td>3만㎡ ~ 30만㎡</td> <td>3만㎡ 미만</td> </tr> </tbody> </table> <p>* 농업생산성은 개별 농지 외에 농로, 양·배수시설, 구거 등 여러 생산기반시설 전반과 연계되어 있어 전용하려는 면적이 클수록 일조·통풍·통작 등 영농환경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p>	구분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농업진흥지역 안	3만㎡ 이상	3천㎡ ~ 3만㎡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0만㎡ 이상	3만㎡ ~ 30만㎡	3만㎡ 미만
구분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농업진흥지역 안	3만㎡ 이상	3천㎡ ~ 3만㎡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0만㎡ 이상	3만㎡ ~ 30만㎡	3만㎡ 미만												
제94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	신중 검토	<p>○ (농지의 체계적 보전을 저해할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과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을 법령을 통해 제한 - 농지보전체계 등을 감안할 때 전용이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할 경우 농지보전체계에 혼선과 도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여 농지법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 <p>○ (인근 영농환경 저해할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로 농지전용 면적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할 경우 농어촌생활환경과 영농환경을 지속 훼손할 우려 												

(2)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의무공급(제95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95조(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지정된 접경지역</p>

현행	개정안
	<p>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조달하는 경우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영·위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대상 품목·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접경지역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가의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강원자치도 접경지역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가(국방부장관)의 구매방식을 강원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의 협의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처를 확대함으로써 도 내 농업·축산업·수산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특정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국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구매하

도록 하고, 그 구매 방법 또한 경쟁입찰 등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음.⁷⁷⁾

둘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⁷⁸⁾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원자치도 내 접경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의무구매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77) 제주도, 세종시, 전북자치도 등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서도 개정안과 같은 규정이 도입된 바 없음.

7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다.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제3장, 안 제96조부터 제108조까지)

(1)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의 조성 등(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97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 방향) ① 강원자치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환경보전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가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자연·생태자원 중 희소성 및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생물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98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제99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원은 강원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 2. 「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6.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7.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00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p>

현행	개정안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강원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지역으로 조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96조), 강원자치도의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며(안 제97조), 강원자치도 내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98조),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안 제99조), 강원자치도 내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안 제100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기후변화 위기 시대 대응 및 강원자치도 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자원의 보전, 강원자치도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산림이용지구 지정 등 강원자치도의 발전시책을 마련하고, 발전시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강원자치

도 내 환경보전 등을 위한 일련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양자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적용 특례(제101조부터 제108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01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되 도지사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접하는 개발계획 등의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p>
<p><신 설></p>	<p>제102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p>

현행	개정안
	<p>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하되 도지사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⑥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p> <p>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2개 이상의</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광역시방자치단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p> <p>제10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하고, 도지사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p>
<p><신 설></p>	<p>제104조(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105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를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③ 자연경관심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p>
<p><신 설></p>	<p>제10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07조(「환경보건법」 등에 관한 특례)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08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①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3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각종 권한을 강원자치도로 이양하며, 관련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이 기 이양된 제주도의 사례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도는 「제주도법」 제363조⁷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된 바 있는데, 이양 후 인·허가의제에 따라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입지·계획 논란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거나 사실상 무산되는 등의 사례⁸⁰⁾가 발생한 바 있음.

79) 「제주도법」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계획 및 사업은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외에 제주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검토·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9. 12. 10.>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제1항제8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80)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등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인·허가 중단해야”, 제주일보, 2020. 5. 7.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208>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101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의 목적·기능 상실 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적정성(상위계획 부합 여부 등), 입지 타당성(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관점을 우선하는 지자체에서 협의권한을 가질 경우 국가 차원의 환경용량과 지역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이가 사실상 어려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 - 한강·낙동강 수계, 백두대간·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 30% 이상 분포 등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계획보다 지역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
제10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협의 제도의 입법 취지와 불일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계획·승인 주체와 독립된 협의기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영향을 회피 또는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적인 협의 제도이나, 승인기관이 협의권한까지 가질 경우는 협의 제도 기능의 근간을 훼손
제10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연 등 비효율성 문제 발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직접 입안하여 사업 승인·협의를 모두 하는 경우 객관성 논란, 자치단체간·지역주민간 환경영향 갈등시에 중립성 문제로 의사결정 지연, 민간투자 광역 공공·공익사업의 협의권 이원화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우려
제104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여부 판단은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재량 권한 ○ 제101조~제103조 삭제 의견에 따라 협의기관이 갖는 거짓·부실 여부 판단 재량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 불필요
제105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영향협회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 규정 ○ 전평·환평·소평 특례 불수용에 따라 도지사에게 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 부여 불필요

제10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는 보호지역의 다수 위치 등 환경·지역적 특성을 고려, 계획수립기관과 협의기관의 객관적·독립 운영이라는 제도 취지 불일치, 협의기관의 이원화, 중복 등 업무의 비효율성 우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특정지역 외 인근 지역의 영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는 것은 곤란
--------------------------------	-----	----------	--

라. 임업 진흥(제4장, 안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1) 「산지관리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0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6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② 「산지관리법」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9항,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p>

현행	개정안
	<p>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정한 사항 및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8조제2항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3. 「산지관리법」 제11조제2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4.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사사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6. 「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7. 「산지관리법」 제40조제4항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8.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p><u><신 설></u> 제110조(산림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4호·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u><신 설></u> 제111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 후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상지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부터</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4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12조(「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전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할 때 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구분·지정한 목적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13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5조의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개정안은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

호에 관한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국에 산재한 산지의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과 강원자치도의 자율적 운영 필요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련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10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	산림청	-	<p><산지관리법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 신중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산지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동일기준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 <p><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신중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상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는 기본계획과 “강원도지사”가 결정·지정하는 사업계획을 강원도지사가 다시 협의하는 것이 되고, 무분별한 자체 협의로 인한 사업중단 및 지연으로 산림훼손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p><산지관리법 제11조제1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해제) : 신중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출기의 능선부 등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태백산맥, 차령산맥과 더불어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출기

			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제10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2항	산림청	신중 검토	<p><산지관리법 제6조제5항(보전산지의 변경·해제) : 신중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한 산림청장 권한의 이양이 없고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으로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p><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산지에서의 구역 등이 지정 등) : 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에 대한 산림청장 권한의 이양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
제111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항	산림청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림등에 설치 가능한 시설 기준을 시·군에서 임의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산림훼손을 유발하고 자연휴양림 등의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할 우려 ○ 비특례 지자체와의 시설 기준의 차이로 자연휴양림등의 정책운영에 혼선 초래 가능
제3항		신중 검토	○ 2023년부터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은 지방 이양되어 국가의 예산지원이 어려움.
제112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특례	산림청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으로 일부구간에 대한 지정해제 정책이 지자체 등으로 위임될 경우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경관, 공익적 기능의 저하 우려 - 소규모에 대한 지정해제는 시·도에서도 현재 핵심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0.5ha 미만의 완충구역과 1ha미만인 핵심구역에 대해 사전협의를 권한위임이 되어있음.
제113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림청	신중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통선산지법은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관리법의 특례를 규정 - 강원특별법을 통해 특례의 특례를 다시 정하는 것은 같은 특별법인 민통선산지법의 제정취지에 반함.

마.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제5장, 안 제114조부터 제121조까지)

(1) 강원자치도에 민군복합단지 우선조성(제114조)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14조(민군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군사시설과 훈련장 등을 지역단위로 통합하고 주거·의료·교육 시설 등을 갖추어 군·군인가족·지역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단지(이하 “민군복합단지”이라 한다)를 강원자치도 내 시·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내 시·군으로 한정한다)에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민군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인 시·군⁸¹⁾에 민군복합단지를 우선 조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군복합단지(민군상생복합타운)는 군사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군의 주둔 여건 보장, 지역 균형발전과 민·군 갈등 예방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군사지역 모델로, 입지의 선정에는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 대상지역 및 배후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1)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2)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범위 등에 관한 특례(제115조 및 제116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15조(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범위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인통제선 : 군사분계선의 이남 5킬로미터 범위 이내 2. 제한보호구역 : 군사분계선의 이남 1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p><신 설></p>	<p>제116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의 국방부심의위원회에 도지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④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의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른 협의결과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p>

현 행	개 정 안
	여야 한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강원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강원자치도 내 접경지역의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등에 대한 강원자치도지사의 건의 권한 등을 신설(안 제116조)하려는 것임.

민간인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은 지난 2008년 하향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로,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25km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현황]

구 분	1972년	1981년	1993년	1997년	2008년
민통선 (통제보호구역/km)	27	20	20	15	10
제한보호구역(km)	27	27	25	25	25

개정안 제115조에 대하여는 민간인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의 축소시 해당 구역의 지뢰제거, 초소이전, 경계시설 구축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점,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민간인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국방과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등에 대한 강원자치도 지사의 건의 권한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⁸²⁾은 보호구역의 지정등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부대로 요청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임.

개정안은 이러한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러한 권한을 강원자치도에 한정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8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115조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관한 특례	국방부	신중 검토	- 민간인통제선과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추가적으로 일괄 축소하는 것은 전·평시 작전계획 변경 과 함께 지뢰 제거, 초소 이전, 경계시설 구축 등을 위한 막대한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3)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17조(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용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을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18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한 경우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19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등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p> <p>③ 국방부장관이 제117조제1항에 따라 미활용군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공공용·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p> <p>⑤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p> <p>제120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미활용 군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제1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1조(지방자치단체의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국유지가 다음</p>

현행	개정안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활용 군용지가 매각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활용 군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시·군 또는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④ 국가는 미활용 군용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개정안은 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특례의 주요내용]

처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에 강원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계획” 수립 의무 ■ 처분계획 수립시 시장·군수 의견 반영 및 도지사에게 통보 의무 ■ 군부대 통폐합·재배치 완료일부터 3개월내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자료 제공
토양 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도지사·시장·군수가 직접 토양오염정화 가능 ■ 토양오염정화시 비용 지원 또는 매각대금에서 제외
처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추진시 징발 해제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우선 검토 의무 ■ 공공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에 우선 매각 → 피징발자 환매권 미적용(보상 전제)
국유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추진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사용·수익 가능
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비용 보조 가능 (하천, 도로, 공원 사업의 경우) ■ 장기분할상환(5년~20년) 지원 가능 (도지사·시장·군수 등 공공사업 추진시)

개정안의 도입여부는 미활용군용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7조⁸³⁾ 등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3)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바. 경제·산업·해양수산업 등 진흥(제6장, 안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1) 석탄경석을 「광물법」에 따른 광물로 간주(제12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2조(폐광지역 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특례) 강원자치도의 폐광지역 안에서 석탄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硬石)은 「광업법」 제3조제1호의 광물로 본다.

석탄경석은 석탄을 캐다 남은 돌로 시멘트, 세라믹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재조명받으면서 자원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탄경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광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지반침화와 수질오염 등 환경훼손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석탄경석을 「광물법」에 따른 광물⁸⁴⁾로 보도록 하여 석탄경석의 활용가치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84) 「광물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磷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珪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珪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珪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다만, 「광업법」에 따른 광물은 광업권을 설정·등록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법정 광물명을 의미하여, 지하에 매장된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산물인 경석은 「광업법」에 따라 이미 광물로 간주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인 바,

개정안에서 광물로 간주하려는 석탄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이 아닌 채굴이 종료된 폐광산지역에 산재한 석탄경석인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미 채굴이 종료된 폐광산지역에 산재한 석탄경석은 그 성질상 「광업법」에 따른 광물로 간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폐광산지역에 산재한 석탄경석의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

(2) 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 및 개발허가, 강원자치도 내 호국원에 대한 특례(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3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

현행	개정안
<p><신설></p>	<p>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또는 국제 화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2.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 보유 또는 2만톤급 이상의 잡화부두 및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보유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p>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리권자는 강원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p>제124조(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 및 개발허가 특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6조, 제52조제1호, 제58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25조(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에 관한 특례)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을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 이장(移葬)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이장을 하는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p>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구의 지정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자유무역지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3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강원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며(안 제124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⁸⁵⁾에 대한 안장·이장 등을 허용(안 제125조)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도입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 기관의 의

85) 2028년까지 강원자치도 횡성군에 국립호국원이 건립될 예정임.

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안 제125조의 경우 그동안 강원자치도 내 국립묘지가 존재하지 않아 도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유족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 지역의 국립묘지에 인장되어 온 바, 유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된 대상자를 강원자치도 내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강원도 출신 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123조,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신중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 가능하므로 별도 규정 신설 불필요 ○ (지정요건)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한 지정요건을 자유무역지역법과 다르게 하는 것*은 타 지역과 형평성·지정실효성에 대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해수부 협의 후 필요시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이 적절
제124조, 해양심층수 취수 해역지정 및 개발허가 특례	해양수산부	신중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수해역 지정 및 개발면허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될 경우 해양환경 훼손 우려, 해양심층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곤란

5. 보칙 및 벌칙(제5편 및 제6편, 안 제126조부터 제137조까지)

제5편 보칙에서는 진흥지구 지정 해제 등에 대한 청문절차(제126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승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정취소 등 감독규정(제127조), 신분예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제6편 벌칙에서는 감사위원회, 국제학교, 출입국관리 분야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제131조부터 제137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보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보칙	비고
제462조(청문)	제126조(청문)	제주법과 유사
제463조(감독)	제127조(감독)	제주법과 동일
제46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128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주법과 동일
제454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강원법 미 규정
제466조(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129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주법과 동일
제467조(벌칙 적용에의 공무원 의제)	제130조(벌칙 적용에의 공무원 의제)	제주법과 동일
벌칙	벌칙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제131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주법과 유사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제132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제 주 법 과 동일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제133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제 주 법 과 동일
제477조(미수범 등)	제134조(미수범)	제 주 법 과 동일
제478조(양벌규정)	제135조(양벌규정)	제 주 법 과 동일
제480조(과태료)	제136조(과태료)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제137조(고발 및 통고처분)	제 주 법 과 동일

가. 청문(제126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제5편 보칙</p> <p>제126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8조제8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63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4. 제127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안 제126조는 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 127조에 따라 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안 제52조86)에서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사업시행자의 신분·자격의 박탈에 관한 사항으로87) 호를 신설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6) 제5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3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87)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나. 감독(제12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27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안 제12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인가, 승인,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철거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관련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자료제출·검사 규정과 거짓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에 한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시정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칙 규정(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28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9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1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 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들은 「제주도법」에 비추어 필요한 보칙 규정들로 보임.

다만, 다음 조항에 대한 추가 신설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임.

첫째, 조례제정사항의 최소기준 관련 조항의 신설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안 제44조),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안 제45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안 제46조) 등 각종 법률에 근거한 환경규제 등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제주도법」의 경우 각종 환경규제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면서 보칙으로 조례제정사항의 최소기준을 두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등(제32조제1항)의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의 특례를 심사할 경우 보칙으로 조례제정사항의 최소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특례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특례를 부여하더라도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①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제6항, 제23조제1항·제7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

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 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② 제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권한의 위임 관련 조항의 신설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에 따라 도지사에게 특별자치도에 따른 각종 권한이 부여되므로, 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중 세부사항(과태료부과 등) 등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도 있어 보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6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라.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제13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1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31조는 감사위원회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다만, 개정안은 안 제33조제5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에게 출석,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⁸⁸⁾ 감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주도법」에서는 비밀누설금지 의무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두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벌칙신설이 필

88) 제33조(자치감사계획 등)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p>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u> 2. <u>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u> 3. 제13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p>제131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6. 부 칙

부 칙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전 강원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서 강원도,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 조례 및 강원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11일 당시 종전 강원도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첫째, 시행일 조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각종 특례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는데, 하위규정의 제정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행일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 상의 일부 부칙규정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은 ‘전부개정법률안’은 입법에 반영될 경우 종전 법률에 따른 부칙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되는 바, 전부개정안의 입법화 후에도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면 해당 규정을 전부개정안에 반영해야 함. 개정안의 경우에는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의 논의경과 및 시점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부칙 규정의 범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반영이 필요한 현행 부칙 규정]

제2조(종전 강원도의 폐지) 종전의 강원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강원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

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임명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사무와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강원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334